2022-2024

#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

관계부처 합동

# CONTENTS


## Ⅰ. 추진 배경 04

1. 제1차 기본계획 개요 04
2. 시민사회 현황과 정책 환경 05

## Ⅱ. 추진 방향 10

1. 수립 방향 10
2. 비전과 가치 11

## Ⅲ. 전략목표별 세부 정책과제 12

**전략목표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**

1.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2
2. 시민사회 연구 · 조사 기반 조성 13

**전략목표 2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지원**

3.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15
4. 비영리 민간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강화 20
5.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기반구축 및 소통 · 협력 강화 22

**전략목표 3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**

6.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24
7.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26

## Ⅳ. 향후 계획 28

## [ 참고 ]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 29

## [ 별첨 ]

1.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36
2. 한국 시민사회 현황 43
3. 영국 시민사회 전략 개요 47

# Ⅰ. 추진 배경

## 1. 제1차 기본계획 개요

### 추진 경과

- ’20.5월「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제정
- ’20.7월「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」용역 실시(’21.1)
- ’20.8월 시민사회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구성 · 운영(14회)
- ’21.5월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등 시민사회 의견 수렴
- ’21.7월 제4차 시민사회위원회 전체 회의(7.23~29) 및 제도개선분과 회의(6.29)
- ’21.10월 제5차 시민사회위원회 전체 회의(10.7) 및 기본계획 간담회(10.28)
- ’21.11월 제6차 시민사회위원회 전체회의(11.9~11)

  * 제4기 시민사회위원회 운영(’20.7~ ) : 기본계획 수립 및 법 제정을 위해 노력(총19회)

### 수립 근거

- **(대통령령)「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」**

> 제3조(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)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.

- **(국정과제)**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등 시민사회 분야 국정과제로 △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△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△시민공익위원회 설치 △소통협력의 사회혁신 △기부 활성화 등

- **(적용대상)** 민법, 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법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, 소비자기본법, 사회복지사업법, 자원봉사활동기본법, 국세기본법(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),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(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)에 근거한 단체 등을 대상

### 법적 성격

- 시민사회 정책을 포괄하는 **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3년 종합계획('22 ~'24)으로 정부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포괄**

-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**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**

  - 시 · 도지사는 **조례에 따라 시 · 도 기본계획을 수립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부는 지자체에 정부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반영하도록 요청

## 2. 시민사회 현황과 정책 환경

### 1) 시민사회 현황

### 개념

- **시민사회**는 **시민**, **법인** 또는 **단체** 등이 **공익활동***을 하는 **영역**이며, **시민사회단체**는 시민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정한 **법인 또는 단체**(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제2조)

  * 시민 · 법인 ·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· 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

  - (공익사업유형) 사회통합, 사회복지, 시민사회, 생태 · 환경, 국제교류,협력 사회 안전,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등

※ 참고 : 시민사회 개념

- (OECD, 1997)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며,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자치적, 조직적 및 집합적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영역
- (영국) 정부와 독립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조직
- (Anheier, 2004)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 및 시장 사이에 위치한 제도, 조직 및 개인들의 영역

## 단체 현황(행안부, '20.12.기준)

- **(등록)**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*는 **15,051개**('20), 등록수는 **매년 증가**하고 있으나 증가 **추세**는 **둔화**

  * (요건) △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, △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, △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, △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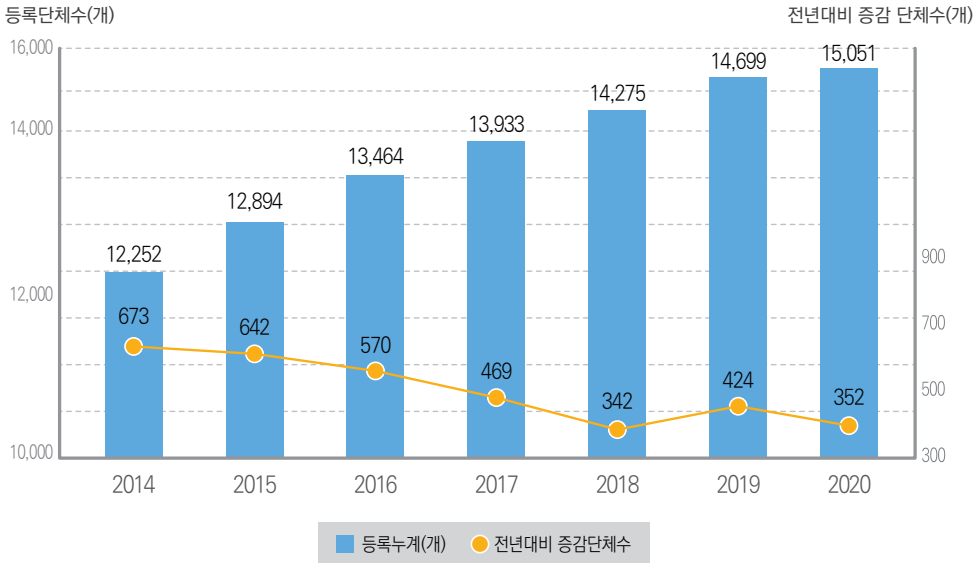


- **(분포)**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에 5,375개 단체가 등록되어 **전체 단체**의 **40% 이상**이 **수도권**에 **집중**

| 계 | 서울 | 부산 | 대구 | 인천 | 광주 | 대전 | 울산 | 세종특별자치시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,296 | 873 | 461 | 734 | 665 | 605 | 394 | 33 | |
| 13,344 | 경기 | 강원 | 충북 | 충남 | 전북 | 전남 | 경북 | 경남 | 제주 |
| | 2,345 | 360 | 489 | 463 | 982 | 609 | 844 | 790 | 401 |

- **(참여)** '06년 이후 **시민사회단체 참여율**은 **약 10% 내외 유지**(e-나라지표)

| | '06 | '09 | '11 | '13 | '15 | '17 | '19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민사회단체참여율(%) | 10.8 | 12.9 | 11 | 11.3 | 9.4 | 8.4 | 12.6 |

## 운영 현황(지방행정연구원, 2019)

- **(직원수) 1~9명인 기관 2,745개(47.1%), 0명**인 기관 2,373개(40.7%)

| | 조사대상 | 응답 | 0명 | 1-9명 | 10-19명 | 20-49명 | 50-99명 | 100명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29,234개 | 5,832 | 2,373 | 2,745 | 307 | 228 | 79 | 100 |

- **연간 자원봉사자가 없는 기관 2,567개(65.6%)**, 100명 이상 기관 540개(12.8%)

| | 조사대상 | 응답 | 0명 | 1-9명 | 10-19명 | 20-49명 | 50-99명 | 100명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29,234개 | 3,911 | 2,567 | 287 | 122 | 218 | 177 | 540 |

- **(회원수)** 전수 조사자료는 없으나 서울시 소재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**100~200명 회원을 보유한 단체**가 **약 50%**

  * '18년 서울시 소재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3,360개 대상 설문 조사 결과(응답 433개소)

- **(재정액)** 예산규모는 **5억원** 이하 **69.3%**, 5천만원 이하 30.5%를 차지

  - **회비(30%), 후원금(23%)**, 정부지원(16%), 사업수익(14%), 민간기관(9%) 순 충당

  * '18년 서울시 소재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3,360개 대상 설문 조사 결과(응답 433개소)

한국 사회는 복잡 ·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, 시민단체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역할과 규모가 분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통합 노력이 필요

###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

-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

| 법률 | 적용대상 | 지원내용 |
|---|---|---|
|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| 동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| • 보조금 지원<br>• 공익사업 지원<br>• 조세감면<br>• 우편요금 지원 |
| 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 |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사회일반 이익을 위한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, 학술,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| • 조세 감면 등 |

## 2) 시민사회 활성화 필요성

**(시민사회 역할 확대)** 과거 한국 시민사회는 **민주화** 운동을 **견인**하며 정치적 **민주주의 정착**과 **사회정의 실현**에 주도하면서 성장하였으며,

- 80년대말 이후 시민사회는 정부에 대한 감시 · 견제에서 교육, 문화 등 **사회 서비스 제공**, **마을공동체** 등 **대안사회 영역**으로 확대

  * **(등록시민단체 현황('17))** 복지(18%), 환경(12%), 정치경제(10%), 청년아동(9%), 자원봉사(8%) 등

  * **(제레미 리프킨, 노동의 종말('05))** 시민사회가 시장에서 급감하는 일자리 수요를 흡수하고 사회적 서비스, 문화적 생활을 제고하는 역할 담당할 필요성 지적

- 전환기를 맞아 시민사회가 **시민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강화**, **민주주의 실현과 국가발전**의 **동력**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**시민사회 활성화**에 대한 **관심**과 지원 필요

  * **(영국 빅소사이어티 정책사례)** 캐머린 정부는 정책권한과 책임을 시민단체, 마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거대정부에서 거대사회로 전환을 주장하며 시민사회청, 국가시민봉사단을 운영

**(공동체 삶의 질 개선)**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힘만으로 어렵고 **시민사회**의 **참여 확대** 및 **공익 활동**이 **새로운 해결수단**으로 **부상**

- 최근 한국 사회는 공동체 유대감이 약화하는 등 경제적 풍요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민통합을 이끄는 모멘텀 필요

  * **(한국인 삶의 질 조사, 통계청('18))**, 최근 10년간 12개 분야 가운데 가족 공동체 분야(가족관계 만족도, 지역사회 소속감, 사회단체 참여율)만 10년 전보다 하락

-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**사회의 지속 가능성**과 **회복 탄력성**을 높이기 위해서는 **시민사회**의 **협조 불가피**

**(시민단체 역량 강화)**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공적 역할이 인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

- 상당수 비영리 민간단체가 전문성 확보나 재정이 열악한 수준으로 실제 시민주도 문제해결 역량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(Voluntary Failure*) 우려

  * **(시민사회 인식과 발전방향 조사연구, '19)**시민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-67%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응답

  - Salamom 교수, 공익활동 주체들의 활동 역량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실패,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나선 시민사회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(Voluntary Failure)고 우려

- 1인 미디어 등장, 언택트 환경 도래로 인해 소모임 위주, 청소년 참여, 온라인 소통을 통한 공익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법제도 **혁신 필요**

  * (예) 청소년 기후행동(10대 환경운동단체), 글로벌 에코비전(한국의 대학생들이 미얀마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교 운영)

# II.
# 추진 방향

## 1. 수립 방향

| | |
|---|---|
| **정책 기조**<br>시민사회 정책 비전의 부재로<br>실무적인 사업 배치 | 시민사회 성장을 인류사회 발전 기여, 민주주의 실현과<br>**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설정** |
| **정부 역할**<br>시민사회 활성화를 시민사회 자체 문제로 간주<br>관리자·보호자 역할 |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<br>**역할과 책임을 지님** |
| **근거 제도**<br>개별법·특별법·조례중심 제도마다<br>관점·규제·지원의 비일관성·정당성 부족 | 관련 제도의<br>**일관성·연계성·형평성·실용성 획득** |
| **정책 수단**<br>공모사업·일부 보조·단기실적<br>또는 특별 대우 |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<br>**중장기 정책과 다양한 수단** |
| **실행 주체**<br>행정 부서 차원의 결정·일부 단체와 개인 의견<br>청취·정책 정당성 획득에 동원 | 민관이 함께 결정·실행 및 평가하는<br>**소통채널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확보** |
| **정책 범위**<br>비영리·마을·사경·자원봉사 등<br>영역 또는 지역별 개별 정책 | 전 분야 통합적 접근을 통한<br>**포괄적·융합적 정책** |
| **정책 수준**<br>중앙부처·지자체 간, 지자체별<br>상이한 정책 기조와 사업 | 국가 기본정책으로서<br>**중앙부처·지자체 일관성 있는 정책사업** |

## 2. 비전과 가치

**비 전**

**활력있는 시민사회, 더 나은 대한민국**

**가 치**

독립성 | 자율성 | 다양성 | 공공성

**추진 원칙**

책무성 | 포괄성 | 연계성 | 실효성 | 지역성

| 3대 전략 목표 | 추진 과제 |
|---|---|
| **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** | ❶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<br>•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체계 마련<br>•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<br>❷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구 · 조사 기반 조성<br>•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<br>•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활성화 |
| **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** | ❸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<br>• 일상의 민주시민학습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<br>• 기부 문화 확산 및 행정체계 효율화<br>•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<br>❹ 비영리민간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강화<br>• 비영리 민간단체 · 비영리 법인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<br>• 공익활동가 일자리 지원<br>❺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|
| **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** | ❻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<br>•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 · 협력 활성화 체계 마련<br>•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협력체계 강화<br>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<br>•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<br>•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|

# III.
# 전략목표별 세부 정책과제

## 전략목표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

◈ **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**

- 전환기를 맞아 시민사회가 협치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역할과 책임 규정 등 법체계 마련

※ 일본 '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' 제정('98)후 단체 대폭 증가(19,963개('04) → 50,169('15))

◈ **시민사회 연구 · 조사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**

- 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가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인력 충원이 어려워 지식의 안정적 생산-전파-활용에 한계

※ 시민사회 관련학과 경희대 등 3곳, 대학원 성공회대학교 등 8곳이나 축소 추세

### 1.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(행안부 · 법무부 · 국무총리비서실)

**|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체계 마련 |**

#### 1-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「시민사회 기본법」제정 추진

- 정부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,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, 시민사회위원회 설치, 국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등 규정

**|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|**

#### 1-2「공익법인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전부 개정 추진

- 시민공익위원회 설치, 공익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고,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총괄 지원 체계 마련

### 1-3 시민사회 관련 법령 ·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추진

- 시민사회 관련 **제도 · 법령**에 대한 **전반적인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**을 위해 시민사회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**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· 운영**

  * 현재 국무총리 소속 '시민사회위원회' 산하 제도개선분과 설치 · 운영 중

## 2. 시민사회 연구 · 조사 기반 조성 (행안부, 국무총리 비서실)

### |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|

### 2-1 비영리 분야 대상 국가 승인 통계 생산

- 종합적인 비영리 분야 **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 마련 추진**

  * 현재 「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」 용역 수행(행안부, '21.6~'21.10)

  - 국가 승인 통계 생산시 **시민사회 관련 국제 지표 반영 확대**

해외 사례

◈ CIVICUS CSI : 세계시민단체연합(CIVICUS)이 59개국 시민사회의 조직 참여, 영향력 등을 비교하기 위해 시민사회지표(Civil Society Index) 개발 조사

◈ '07년부터 미국 연방노동통계국과 존스 홉킨스 대학 시민사회연구소는 비영리부문 고용 임금 통계 제공 및 경제 사회적 기여도 조사 발표

### |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활성화 |

### 2-2 시민사회 · 공익활동 관련 정부 연구용역의 민간 참여 활성화

- **국책연구기관**의 **시민사회 관련 연구 확대 및 활성화 방안** 마련

  - 경제 ·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지원사업 주관연구기관 및 협력연구기관의 **연구용역 참여 주체 자격요건 완화** 등

## 2-3 시민사회, 정부, 학계 등 참여하는 공론장 마련을 위해 기존 '시민사회단체 연찬회'를 '(가칭) 시민사회 컨퍼런스'로 확대 운영

- 국책연구소 시민사회 관련 부서 · 연구자 네트워크 및 민간 연구기관 · 연구자 **네트워크 구축 촉진**

참고 사례

◈ **미국 인디펜던트 섹터(Independent Sector) 시민사회 연례 컨퍼런스**

- 인디펜던트 섹터 : 미국 재단과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연합체
- 40년간 시민사회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. 2018년부터는 전국의 지역사회 조직가, 자선가, 비영리 지도자,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모여 시민사회 관련 현안 논의와 담론 형성을 진행하는 2박3일 일정 컨퍼런스 개최

## 2-4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

-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**관련 연구 활성화 및 허브 기능 수행**을 위해 국책 또는 민간 연구기관, 대학 등을 **시민사회 연구기관**으로 **지정**
  - 국책연구소, 지방연구소, 민간싱크탱크 등과 협업하는 **싱크넷 방식의 운영모델 적용** 및 **민관협치에 기반한 운영방안 수립**

유사 사례

◈ **(갈등관리연구기관)** 국조실,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'07년부터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운영,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허브 역할수행, 244백만원 지원

- 단국대분쟁해결센터, 방통대공존협력연구소, 한양대갈등문제연구소
- 갈등관리 인력양성 갈등해결 자문 컨설팅, 갈등관리 매뉴얼 등

## 2-5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주기(매3년)에 맞추어 기본계획 이행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 정리한 활동백서 발간

* 국무총리 비서실 제1기~3기「시민사회발전위원회」백서 기발간

# 전략목표 2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지원

## 3.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

### | 일상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(교육부, 행안부) |

◈ **지역단위 참여 · 협치 활동이 확대되도록 민주시민교육 지원 필요**

- 57개 지자체 「민주시민 교육조례」 제정
-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('18)

◈ **민주시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및 콘텐츠 보강 추진**

- 초 · 중 · 고 교육과정 연계
-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
- 민주시민의식 공공성 교육 강화

### 3-1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 과정 확대

- 존중 · 자율 · 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, 참여 · 협력형 수업, 학생자치 등 **민주적 학교 문화**를 실천하는 **민주학교***(학교모델) 운영 지원

  *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(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, 교육부, 2018)

- 초 · 중 · 고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**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**하고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등 **교수학습자료 개발**

- 창의적 체험활동 및 중학교 **자유학기** 등을 **활용**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**민주시민교육 실시**

### 3-2 일반인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 지원

- 아동, 청소년, 청년, 중년, 고령층 등 교육대상의 생애주기별 민주**시민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과정** 마련

  -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, 정책참여 교육, 헌법 · 기본권 교육 등

  -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 및 기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

- **평생교육 프로그램에 '시민참여교육' 과정 확대**

  * (평생교육 6대영역 프로그램 현황('20)) 성인기초문해(0.3%), 학력보완(11.3%), 직업능력향상(36.9%), 문화예술(30.1%), 인문교양(21.2%), 시민참여교육(0.1%)

- 시민참여 및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단위인 **다양한 학습모임 운영지원**

  * 일상에서 시민의 공공의식(시민성) 제고를 위한 학습, 토론 · 숙의, 참여기회 확대

## 3-3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설

-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대상 **민주시민교육 과정 개설**, 온라인 상시 교육을 위한 **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**

  - '지방공무원 교육운영계획'에 반영하고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설 지원
  - 공무원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· 배포

## 3-4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기반 마련

-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확산, 포럼 운영 등 공론화 추진 및 민주시민교육 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

- 중앙지원조직(민주시민교육센터)-지방자치단체-시민사회 등 협력 강화

  * (현황)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('20)

## | 기부문화 확산 및 행정체계 효율화(법무부, 행안부, 복지부, 국세청) |

◈ 한국 시민사회는 영역과 활동의 급격한 성장에도 재정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기부 활성화는 시민사회 자율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

※ 2017년 기부지수(CAF World Giving Index 2017), OECD 35개국 중 한국은 21위

### 3-5 기부 관련 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

- **사회적 상속(유산기부)* 제도 확산**을 위해 민관합동 캠페인 등 홍보 강화 및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한 전문기관 상담 및 법률지원 확대

  * (도입현황) 사회환원 기부신탁 : 신탁자가 사망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. 지정 기부금의 일종으로 소득공제 혜택, 전체기부금의 0.5%에 불과. (상증세법 제16조1항,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1항)

  * (관련사례) 레거시10 : 영국, 2011년 시작한 유산의 10%를 자선문화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캠페인으로 정부는 상속세율 40%에서 4%를 공제한 36%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전체기부금의 33% 차지한다고 함

  * 2019년 국회는 국제유산기부의 날(9.13)을 「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」로 선포한 바 있음

- **공익신탁제도* 인지도 제고 및 상품개발** 등 활성화 추진

  *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(공익신탁법)

- **기부장려금 제도* 활성화**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 및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

  *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)

### 3-6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나눔 분위기 확산

- 기부 활성화 및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**국가 ·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**하는 법령 개정 추진

  * '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' 개정 추진 등

- **기부주간 지정 · 운영 및 '착한기부자' 선정 · 포상, 혜택* 부여** 등을 통해 기부자 예우 강화 및 나눔 분위기 확산

  *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'아름다운 납세자'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

  -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정부 · 시민사회 등 **민 · 관 공동 캠페인 지속 추진**

  * (현황) 기부문화발전 컨퍼런스 및 기부투명성 협약식('18), 유산기부 인식개선 캠페인('19) 등 기부문화 확산 공동캠페인 추진 중

- 자신 또는 제3자가 기부 가액의 일정 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**기부연금* 제도 도입 방안 검토**

  * (사례) 미국은 기부연금규모 150억달러이며 기부연금수령자 8,200명('20년 기준)에 대해서는 기부가액의 50%까지 기부자 사망시까지 생활비를 제공

## 3-7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

- 일반 국민들이 기부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확인하고, 모금단체의 모집등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**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*** 추진

  * (현행) 행안부 기부금품 등록단체(250개) + 국세청 의무공시 법인(1만여 개)

  * (확대) 복지부(사회복지시설정보), 법무부(공익신탁공시), 교육부(교육기부)

- **기부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모금단체 홍보 및 교육**

## 3-8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정 부담 완화

- 각 부처 · 지자체의 기부 관련 공시 · 보고 서식 현황 조사를 통해 **기부 관련 서식 표준 및 간소화 방안** 마련

- **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 메뉴얼** 마련 및 **공익법인 회계 실무 교육** 강화

- 기부금품 모집시 **사후 등록 및 사후변경등록 허용** 및 기부금품 **모집 사업의 원칙적 허용, 예외적 금지**로 규정 변경 등 **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개선**

## |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(국무총리비서실) |

◈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과 활동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 제고 지원

※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7년 OECD 34개국 평균 24%인 반면, 한국은 18% 수준(World Giving Index, 2016)

### 3-9 시민사회 활동가 인재 양성 지원 추진

-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**시민사회 활동 인력 교육 · 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**

  -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

### 3-10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

- 공익활동 이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위해 '**공익활동 이력제**' 및 '**공익활동 마일리지 (Basic Public Mileage)**' 등 도입방안 연구

-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익활동 이력 기록 · 관리 · 공개 등 공익활동 관련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'**공익활동정보시스템' 구축 방안** 연구

관련 사례

◈ **(타임뱅크)**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립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단위 교환시스템으로 미국, 영국, 스페인 등에서 운영 중

◈ **(네이버후드 매칭펀드)** 마을활동에 쓰인 주민 시간, 재능, 현물, 현금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. 시애틀, 미네소타, 벤쿠버 등에서 활용

◈ **(1365자원봉사포털)** 행안부, 자원봉사활동의 이력기록 · 관리,공개 등 정보관리

## 4. 비영리 민간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강화 (기재부, 행안부)

### | 비영리 민간단체 · 비영리 법인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 |

◈ 시민사회는 시장에 비해 자원 확보가 어렵고 정부 지원도 제한적이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공익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공익창출 활동 한계

※ 세계 33개국 시민사회 분석 결과, 시민사회의 회비의존도는 개도국의 경우 62%, 선진국의 경우 45%였고 정부지원이 비중은 각각 22%, 48%임(한국, 정부지원 24%)

※ 독일, 미국, 프랑스 등 시민사회가 성장한 나라에서는 시민사회의 재원이 회비보다 정부 지원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

### 4-1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추진

- **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검토**

  -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개선방안 검토*, 조직 운영 및 회계 등 컨설팅 강화**

    *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(2000년) 이후 환경변화 등 법 개정 수요 반영

    ** (근거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- 보조금 신청 · 진행 · 정산 간소화 등 개선사항 확산을 위한 **가이드북 보급 및 홍보**

- 공익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**보조금 지원 등 사업방식 개선**

  -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을 위해 **운영방식 개선** 및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유형 발굴 등 **지원방식 다각화 추진**

- **「소득세법」상 공익단체 지정 요건 등 개선방안** 검토

  * 공익단체 현황파악, 공익법인과의 각종 요건 등에 대한 비교 · 분석 등을 통해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검토

## |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일자리 지원(기재부, 행안부, 고용부, 통계청) |

◈ 공익활동가 일자리 지원 등 공익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

※ 미국 등 세계 31개국 평균 비영리부문 고용 비중은 총고용 4.5%, 한국은 2.7% 23위로 비영리부문의 고용 창출 규모는 제한적임

### 4-2 공익활동가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가 고용지원제도 적용 확대

- 비영리법인 · 민간단체, 임의단체 등 **조직 기반 활동가에 대한 직업분류체계** 마련
  -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통해 현행 '시민단체활동가'의 용어 정의 및 분류 상향 검토('24)
- 각종 일자리 정책 수립 · 추진시, 비영리 민간단체 · 법인의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· 지원 및 **공익 활동가들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방안 마련 · 포함**
  - 고용유지지원금,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,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, 비영리단체 채용관 운영, 비영리단체 채용정보 워크넷 연계 등

### 4-3 비영리 일자리 홍보 강화

- 워크넷*에 비영리 일자리 전용 채용관 마련 등 **정부 일자리 포털 통한 원활한 비영리 일자리 정보 유통**

  * 고용노동부,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인 · 구직 및 직업 ·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
- 비영리 일자리 관련 **체험 콘텐츠 개발 및 직업 체험관 신설** 추진,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**홍보 및 인식 제고 지원**
- 비영리 영역 일자리, **집중 알선 및 채용 대행 등 서비스** 지원

## 5.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기반구축 및 소통 · 협력 강화 (국무총리비서실, 행안부)

◈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과 시민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광역단위 · 기초단위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 유도

• 시 · 도 시민사회위원회 구성 •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•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

### 5-1 중앙정부와 지역시민사회 간 소통 · 협력 강화

- **중앙-시 · 도 시민사회위원회 연계 강화**

  - 시 · 도 시민사회위원회 상호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위원회와 시 · 도 시민사회위원회 간 협의와 논의 정례화

조례 현황

◈ **(협의체 구성 근거)** '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' 제13조

- 시 · 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· 도지사 소속으로 시 · 도 시민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음

◈ **(조례제정 지자체)** 서울시, 경기도, 충남도, 울산시, 제주도, 경남, 대구시 등 7곳

-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**'지역 순회 간담회' 정례화**

  * '21년, 시민사회활성화 표준조례 등 지역순회간담회 11회 추진

- 민관협치 활성화,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위해 정부-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**'민관 협치 포럼' 확대 운영**

  * 제1회 전국민관협치포럼 개최(충남도, 국무총리비서실, 행안부 등 '19.11)

- 주요 국민참여제도에 시도 및 시군구의 **시민사회 대표 참여 비율 적용**

## 5-2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 ·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**표준조례 보급 및 제정 지원**

  -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*('21.1月 마련) 보급(국무총리비서실)

**<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주요내용('21.1) >**

- 3년마다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· 공표
- 시 · 도지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(20명 내외)
- 시민사회 전담부서 및 공익활동 지원 조직 설치 · 운영
- 비영리일자리 지원 등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
-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 공로 공무원, 시민, 기관 및 단체 포상

-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위한 '**시민사회 소통 · 협력 평가 지표' 개발**

## 5-3 광역 단위 민 · 관 · 공 협력 네크워크 구축 및 확산

-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**'지역문제해결플랫폼* 구축 및 확산'**

  -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환경, 돌봄, 교육 등의 제안과제 발굴부터 의제실행 전반에서 민 · 관 · 공 협업

  * 지역의 경제, 자치, 복지 등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협업공간

  * 대구, 대전, 충남 등 11개 지자체는 관련 단체가 함께 입주하여 협업하도록 복합공간 조성

충남내포혁신플랫폼 전경

충남내포혁신플랫폼 내부

# 전략목표 3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

## 6.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(국무총리비서실, 행안부, 인사처)

◈ 종래 재해구호 · 자원봉사 등 일시적 · 부분적 민관 협력으로는 팬데믹 ·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 한계
⇒ 상시적 소통 협력 채널 활성화 및 범정부적 위기 대응체계 구축

- 비대면 소통 플랫폼 활성화
- 위기관리 거버넌스 모델 개발
- 열린 정부 기반 조성

### |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 · 협력 활성화 체계 마련 |

#### 6-1 정부-시민사회 간 온 · 오프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

-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**'시민통통*' 활성화**
  -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방안,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제언, 의견 공유, 토론 공간 등 공론화 창구로서 기능 강화

  * 시민단체와 정책정보 공유 등 상시적 소통 · 협력을 위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('20.12 국무총리비서실)

-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**'정부-시민사회 소통협의체*' 운영 강화**

  * '17년부터 국무총리비서실과 시민단체 간 매년 2-3회 소통 협의회 개최

#### 6-2 시민사회와 소통 · 협력에 관한 공직사회의 인식 제고

- 각 부처 시민사회와의 **소통 · 협력 정책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**
- 시민사회 **소통 · 협력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** 마련
  - 정부업무평가 등 **민간 소통협력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** 마련 및 반영
  - 시민사회 활성화 **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성과 평가 방안** 검토

- 공무원 대상 **소통 · 협력 교육 · 훈련 과정 마련**
  - 민관협치, 정책 공동생산 등 **교육 · 훈련 커리큘럼** 마련, 시민사회 등 **민간 강사 참여 확대**
-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 활동 공로에 대해 **지자체, 공무원, 시민사회 활동가 등 포상 제도** 마련

## 6-3 범정부적 위기 소통 · 협력 대응체계 구축

- 재난 등 위기대응과 극복을 위한 **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**
  - 재난 등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 강화, 위기 대응 전달체계로서의 시민사회 역할 및 지원 강화, 거버넌스 운영방안 등
- 재난 시 위기대응 **시민사회 협력 인프라 구축**
  -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구호활동 등 정부와 지자체 위기 대응 민관협력망 구축

  * (사례)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민관협력반, 코로나19 대응 대구시 범시민대책위, 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,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

  - 위기취약계층 대상 위기대응 민관공동 메뉴얼 개발 및 배포

## 6-4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공공의 협업 강화

- 민간생산 데이터의 공적 활용 촉진 및 지원 추진
- 국제기준(OECD 열린정부)에 맞춘 **열린 정부 기반 조성**

  * OECD, 열린 정부의 핵심의제로 공공 소통을 채택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

  * 한국, 열린정부파트너십(Open Government Partnership) 가입('11.) 열린정부포럼 구성 · 운영

## 7.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(외교부)

◈ 공공외교 분야에서 정부간 교류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
- OECD DAC 시민사회와 협력 심화 권고('17)
- 80여개 시민단체 ODA 사업 참여('20)

⇒ 시민사회 참여촉진을 위해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, 단체역량 강화, 협력사업 발굴

### |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사업 참여 확대 |

#### 7-1 공공외교에 시민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

- 국가간 미래지향적 **관계구축 및 교류활성화**를 위한 **시민사회**의 **활동 지원**
- **각종 글로벌 이슈 분야**에서의 **시민사회**의 **활동** 지원
- 국내 · 외 시민사회간 **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**
- 우리 시민사회가 **국제연대와 협력에 기여**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추진하는 **국민참여형 공공외교사업**에 시민사회 등 **NGO 참여 확대**

#### 7-2 공공외교 정책추진 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

- **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활동** 강화
  - 중앙부처, 유관기관,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"**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**" ('20.7~) **정례화**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
  - 주요 공공외교 정책수립시 **정부-시민사회간 소통 활성화**

### |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|

#### 7-3 정부-시민사회 협업 활성화

- **범정부 대화채널**(정부-시민사회 정책협의회) **정례 운영** 및 시행기관(KOICA · EDCF) 차원의 **협의 채널 활성화 및 연계** 추진

* 미국, 호주는 '지속가능개발 아젠다' 효과적 이행을 위해 민간협력으로 전략 수립

- **정책협의회**를 통해 **기본정책 이행방안**의 **이행과제**를 **구체화**하고, △과제 이행점검 △공동평가 △평가결과 공유 등 추진

- 개발협력 분야 정책개선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**우호적 환경 조성 및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**를 위한 상호 노력 확대

- △ODA 정보공개, △시민사회 회계 투명성, △환경 · 사회 · 인권적 부정적 영향 예방* 등 추진

*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운영 강화, 인권영향평가 제도화, 현지주민 구제제도 운영 및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강화

## 7-4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

- **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**을 **확대**하고, 시민사회 강점 분야(인도적 지원 · 보건 · 교육 등)에 대한 **협력 강화**

- 현장 중심 개발협력을 위한 **시민사회협력 예산* 확대 노력 지속**

* 시민사회협력 사업 실적은 48백만불로 우리 양자 원조의 2.2% 수준('19년)

- 장애인단체(DPO), 사회적혁신기업 등 새로운 **국제협력 주체 참여 확대**를 위한 제도 개선, **역량강화 지원**(컨설팅, 교육 등) **사업 확대**

## 7-5 시민사회 참여 프로그램 다각화

- 개도국 내 ODA 사업과 시민사회 사업* 간 **연계 추진 방안 모색**

*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해외사업(103개국 대상 2,090개 사업, 5,933억원 규모 / 2019 CSO 편람 기준)과 정부 ODA 사업 간 시너지 제고 추진

- △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△대국민 인식 제고 △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**정부-시민사회 협력 지속 확대**

*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ODA와 시민사회 활동간 협력을 위한 場 마련 병행

-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책무성 증진을 위해 **인권기반접근(Human Rights Based Approach) 사업 확대** 및 추진 과정에서의 **현지 시민사회, 우리 시민사회 참여 다각화**

# IV.
# 향후 계획

## 추진 일정

- 부처별 소관 과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(~'22.3)

  - '22년 이행계획 수립('21.12) → 실무협의회 검토 → 시민사회위원회 심의

  *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시 주요과제 및 계획기간 등 수정 반영

- 과제별 추진상황 반기별 점검 및 시민사회위원회 보고(국무총리비서실)

  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(제4조)

| 시민사회 관련 기관별 역할 |

| 부처/기관 | 주요 역할 |
|---|---|
| 국무총리비서실<br>시민사회비서관실 | △시민사회 상시적 소통 및 현안 협의 △시민사회 활성화 의제 발굴 및 협의 조정 △시민사회위원회 운영 △기본계획 수립 이행 및 점검 △지자체 및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 지원 △시민사회 연구기관 지정 운영 |
| 행안부 자치분권실<br>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| △민주시민교육 △비영리민간단체 지원<br>△자원봉사 △지역사회 시민참여 확대 및 시민사회 지원 |
| 외교부<br>공공문화외교 | △시민사회 국제협력 활성화 및 지원 |
| 고용부<br>법무부<br>기재부(국세청) | △일자리 지원 △공익법인 △법인세, 지정기부금 단체 관리 등 |

[참고]

#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

| 연번 | 정책과제(7개 과제, 33개 세부과제) | 부처 |
|---|---|---|
| [1]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(3개 과제) | | |
| 1-1 |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「시민사회 기본법」제정 추진 | 행안부 |
| 1-2 | 「공익법인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전부 개정 추진 | 법무부 |
| 1-3 | 시민사회 관련 법령 ·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추진 | |
| | 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| 총리비서실 |
| | ②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기능 강화 | 행안부<br>총리비서실 |
| [2] 시민사회 연구 · 조사 기반 조성 (5개 과제) | | |
| 2-1 | 비영리 분야 대상 국가 승인 통계 생산 | 행안부 |
| 2-2 | 시민사회 · 공익활동 관련 정부 연구용역의 민간 참여 활성화 | 총리비서실 |
| 2-3 | 시민사회, 정부, 학계 등 참여하는 공론장 '(가칭) 시민사회 컨퍼런스' 확대 운영 | 총리비서실 |
| 2-4 |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| 총리비서실 |
| 2-5 | (가칭)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백서 발간 | 총리비서실 |
| [3]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(10개 과제) | | |
| 3-1 |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 과정 확대 | 교육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2 | **일반인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 지원** | |
| | ① 아동, 청소년, 청년, 중년, 고령층 등 교육대상의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과정 마련 | |
| | -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, 정책참여 교육, 헌법 · 기본권 교육 등 | 행안부 |
| | -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 및 기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 | 교육부 |
| |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'시민참여교육' 과정 확대 | 교육부 |
| | ③ 시민참여 및 일상(풀뿌리)의 민주주의 실천단위인 다양한 학습모임 운영지원 | 행안부<br>교육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3 | **중앙 및 지방 공무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설** | |
| | ① '지방공무원 교육운영계획'에 반영하고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설 지원 | 행안부 |
| | ② 공무원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· 배포 | 인사처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4 | **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기반 마련** | 행안부 |
| | ①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확산, 포럼 운영 등 공론화 추진 및 민주시민교육 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| |
| | ② 중앙지원조직(민주시민교육센터)-지방자치단체-시민사회 등 협력 강화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5 | **기부 관련 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** | |
| | ① 사회적 상속(유산기부) 제도 활성화 홍보 및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, 법률지원 확대 | 행안부<br>국세청 |
| | ② 공익신탁제도 인지도 제고 및 상품개발 등 활성화 추진 | 법무부 |
| | ③ 기부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 및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 | 국세청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6 | **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나눔 분위기 확산** | 행안부 |
| | ① 기부주간 지정 · 운영 및 '착한기부자' 선정 · 포상, 혜택* 부여 등을 통해 기부자 예우 강화 및 나눔 분위기 확산 | 행안부 |
| | ② 기부 활성화 및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국가 ·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령 개정 추진 | 행안부 |
| | ③ 기부연금 제도 도입 방안 검토 | 행안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7 | **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** | 행안부 |
| | 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| |
| | ② 기부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모금단체 홍보 및 교육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8 | **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정 부담 완화** | |
| | ① 기부 관련 서식 표준 및 간소화 방안 마련 | 총리비서실 |
| | ②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 메뉴얼 마련 및 공익법인 회계 실무 교육 강화 | 국세청 |
| | ③ 기부금품 모집시 사후 등록 및 사후변경등록 허용 및 기부금품 모집 사업의 원칙적 허용, 예외적 금지로 규정 변경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개선 | 행안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9 | **시민사회 활동가 인재 양성 지원 추진** | 총리비서실 |
| | ① 시민사회 활동 인력 교육 · 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3-10 | **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** | 총리비서실 |
| | ① 공익활동 이력제 및 공익활동 마일리지 등 도입방안 연구 | |
| | ② 공익활동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| |

| [4] 비영리 민간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강화 (3개 과제) | | |
|---|---|---|
| 4-1 | **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추진** | |
| | 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검토 | 행안부 |
| | ② 보조금 신청 진행 정산 간소화 등 개선사항 가이드 보급 및 홍보 | 행안부 |
| | ③ 공익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사업방식 개선 | 행안부 |
| | ④「소득세법」상 공익단체 지정 요건 등 개선방안 검토 | 기재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4-2 | **공익활동가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가 고용지원제도 적용 확대** | |
| | ① 비영리법인 · 민간단체, 임의단체 등 조직 기반 활동가에 대한 직업분류체계 마련 | 통계청 |
| | ② 각종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민간단체 · 법인의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· 지원 및 공익 활동가들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방안 마련 · 포함 | 고용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4-3 | **비영리 일자리 홍보 강화** | 고용부 |
| | ① 정부 일자리포털 통한 원활한 비영리 일자리 정보 유통 | |
| | ②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직업 체험관 신설 추진, 비영리일자리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지원 | |
| | ③ 비영리 영역 일자리, 집중 알선 및 채용 대행 등 서비스 지원 | |

| [5]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기반구축 및 소통 · 협력 강화 (3개 과제) | | |
|---|---|---|
| 5-1 | **중앙정부와 지역시민사회 간 소통 · 협력 강화** | 총리비서실 |
| | ① 중앙-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연계 강화 | |
| | ② 지역시민사회 소통 활성화를 위한 '지역순회 간담회' 정례화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③ 정부-지자체공무원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'민관협치 포럼' 확대 운영 | |
| | ④ 국민참여제도에 시민사회 대표 참여비율 적용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5-2 | **지역 시민사회와 소통 ·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** | |
| | ①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보급 | 총리비서실 |
| |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위한 '시민사회 소통 · 협력 평가 지표' 개발 | 행안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5-3 | **광역 단위 민 · 관 · 공 협력 네크워크 구축 및 확산** | 행안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**[6]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(4개 과제)** | | |
| 6-1 | **정부-시민사회 간 온 · 오프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** | 총리비서실 |
| | ①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'시민통통' 활성화 | |
| | ②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'정부-시민사회 소통협의체' 운영 강화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6-2 | **시민사회와 소통 · 협력에 관한 공직사회의 인식 제고** | |
| | ① 소통 · 협력 정책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| 총리비서실 |
| | ② 시민사회 소통 · 협력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| 총리비서실 |
| | ③ 공무원 대상 소통 · 협력 교육 · 훈련 과정 마련 | 인사처<br>행안부 |
| | ④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 활동 공로에 대해 지자체, 공무원, 시민사회 활동가 등 포상 제도 마련 | 총리비서실 |

| | | |
|---|---|---|
| 6-3 | **범정부적 위기 소통 · 협력 대응체계 구축** | 행안부 |
| | ① 재난 등 위기대응과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| |
| | ② 재난 시 위기대응 시민사회 협력 인프라 구축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6-4 | **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공공의 협업 강화** | 행안부 |
| | ① 민간생산 데이터의 공적 활용 촉진 및 지원 추진 | |
| | ② 국제기준(OECD 열린정부)에 맞춘 열린 정부 기반 조성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**[7]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(5개 과제)** | | |
| 7-1 | **공공외교에 시민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** | 외교부 |
| | ① 관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지원 | |
| | ② 각종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의 시민사회 활동 지원 | |
| | ③ 국내외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 | |
| | ④ 시민사회가 국제연대와 협력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 제공 | |
| | ⑤ 국민참여형 공공외교사업에 시민사회 등 NGO 참여 확대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7-2 | **공공외교 정책추진 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** | 외교부 |
| 7-3 | **정부-시민사회 협업 활성화** | 외교부<br>총리비서실 |
| | ① 정부-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 운영, 시행기관 협의 채널 활성화 및 연계 추진 | 외교부<br>총리비서실 |
| | ② 개발협력 정책개선,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및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| 외교부 |

| | | |
|---|---|---|
| 7-4 | **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** | 외교부 |
| | ①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, 협력 강화 | |
| | ② 시민사회협력 예산 확대 | |
| | ③ 새로운 국제협력 주체 참여확대, 역량강화 지원 사업 확대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7-5 | **시민사회 참여 프로그램 다각화** | 외교부 |
| | ① 개도국내 ODA 사업과 시민사회 사업 간 연계 추진방안 모색 | |
| | ② 현지 시민사회 협력, 대국민 인식제고,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등에 정부-시민사회 협력 지속확대 | |
| | ③ 인권기반접근 사업 확대 및 현지시민사회, 우리시민사회 참여 다각화 | |

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(2022~2024)

# 활력있는 시민사회, 더 나은 대한민국

전략목표 1

##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

###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
- 공익법인법 개정을 통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
- 민관합동협의체 구성하여 법제도 개선 지속

###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기반 조성

- 비영리 분야 국가 승인 통계 생산 체계 마련
-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운영
-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백서 발간

전략목표 2

##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지원

###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

- 일상의 민주시민학습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
- 기부문화 확산 및 행정체계 효율화
-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

### 비영리 민간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강화

- 비영리 민간단체·비영리 법인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
- 공익활동가 고용지원제도 확대 등

###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

- 중앙정부와 지역시민사회 간 소통·협력 강화
-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·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광역 단위 민·관·공 협력 네크워크 구축 및 확산

전략목표 3

##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

###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

- 정부-시민사회 간 온·오프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
- 시민사회와 소통·협력에 관한 공직사회의 인식 제고
- 범정부적 위기 소통·협력 대응체계 구축
-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공공의 협업 강화

###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

-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
-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쉽 강화

#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이
# 이렇게 바뀝니다.

**정책 기조**

시민사회 정책 비전의 부재로
실무적인 사업 배치

시민사회 성장을 인류사회 발전 기여, 민주주의 실현과
**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설정**

**정부 역할**

시민사회 활성화를 시민사회 자체 문제로 간주
관리자·보호자 역할

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
**역할과 책임을 지님**

**근거 제도**

개별법·특별법·조례중심 제도마다
관점·규제·지원의 비일관성·정당성 부족

관련 제도의
**일관성·연계성·형평성·실용성 획득**

**정책 수단**

공모사업·일부 보조·단기실적
또는 특별 대우

시민사회 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
**중장기 정책과 다양한 수단**

**실행 주체**

행정 부서 차원의 결정·일부 단체와 개인 의견
청취·정책 정당성 획득에 동원

민관이 함께 결정·실행 및 평가하는
**소통채널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확보**

**정책 범위**

비영리·마을·사경·자원봉사 등
영역 또는 지역별 개별 정책

전 분야 통합적 접근을 통한
**포괄적·융합적 정책**

**정책 수준**

중앙부처·지자체 간, 지자체별
상이한 정책 기조와 사업

국가 기본정책으로서
**중앙부처·지자체 일관성 있는 정책사업**

#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(2022~2024)

## 비 전

## 활력있는 시민사회, 더 나은 대한민국

### 3대 전략 목표

**전략목표 1**

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.

**전략목표 2**

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

**전략목표 3**

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지원합니다

### 정책 과제

1.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2.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기반 조성

3.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
4. 비영리 민간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강화
5.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

6.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
7.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

전략목표 1

#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**생태계를 조성**합니다.

## 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**제도적 기반 마련**

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

공익법인법 개정을 통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

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

## ②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**연구 조사 기반 조성**

비영리 분야 국가 승인 통계 생산

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운영

시민사회 활성화 백서 발간

전략목표 2

#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역량을 **강화**하고 성장을 **지원**합니다

## ❸ 민주시민교육 **확대**와 공익활동 **참여 촉진**

- 일상의 민주시민학습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
- 기부문화 확산 및 행정체계 효율화
-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

## ❹ **비영리 민간단체** 및 **공익활동가** 지원 강화

-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
- 공익활동가 일자리 지원

## ❺ 지역 시민사회의 **협력 강화** 및 **기반 구축**

- 중앙정부와 지역시민사회 간 소통·협력 강화
-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·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광역 단위 민·관·공 협력 네크워크 구축 및 확산

전략목표 3

# 민관협력과 사회적 **연대 강화**를 **지원**합니다

## ⑥ 정부와 시민사회 간 **소통협력 강화**

정부-시민사회 간
온·오프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

시민사회와 소통·협력에 관한
공직사회의 인식 제고

범정부적 위기 소통·협력
대응체계 구축

데이터 기반으로
시민사회와 공공의 협업 강화

## ⑦ 국제사회와 **협력 강화**

공공외교 사업에
시민사회 참여 확대

국제개발협력에서
시민사회 파트너쉽 강화

##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

# 약속하고 실천합니다.

### 가 치

**독립성**
시민사회를 사회의 공식섹터로 인정하고 고유성에 대한 존중

**자율성**
시민사회 특성과 호흡에 맞는 자율적 활동에 대한 보장

**공공성**
상호호혜에 바탕을 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 공동의 이익 추구

**다양성**
이슈·분야·지역에 걸쳐 다양한 공익활동의 조화로운 발현과 성장

### 추진원칙

**책무성**
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존중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 증대

**포괄성**
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적 정부 전략 마련

**실효성**
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반응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정책 집행

**연계성**
범정부 정책으로 지역, 영역, 주체 간 연계를 촉진하는 통합체계 구축

**지역성**
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, 지역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지원

# 별첨2 한국 시민사회 현황

##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등록단체

-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**2020년 기준 15,051개**(행정안전부 NPAS, '20.12.기준)

  * NPAS(NPO Public Activity Support system · 비영리 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)

-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**매년 지속적으로 증가**하고 있으나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

|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|

| |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등록누계 | | 12,252 | 12,894 | 13,464 | 13,933 | 14,275 | 14,699 | 15,051 |
| 구분 | 중앙 | 1,494 | 1,561 | 1,599 | 1,624 | 1,662 | 1,685 | 1,707 |
| | 지자체 | 10,758 | 11,333 | 11,865 | 12,309 | 12,613 | 13,014 | 13,344 |
| 전년대비 증감 | | 673 | 642 | 570 | 469 | 342 | 424 | 352 |
| 증감비(%) | | 5.8 | 5.2 | 4.4 | 3.4 | 2.5 | 2.9 | 2.4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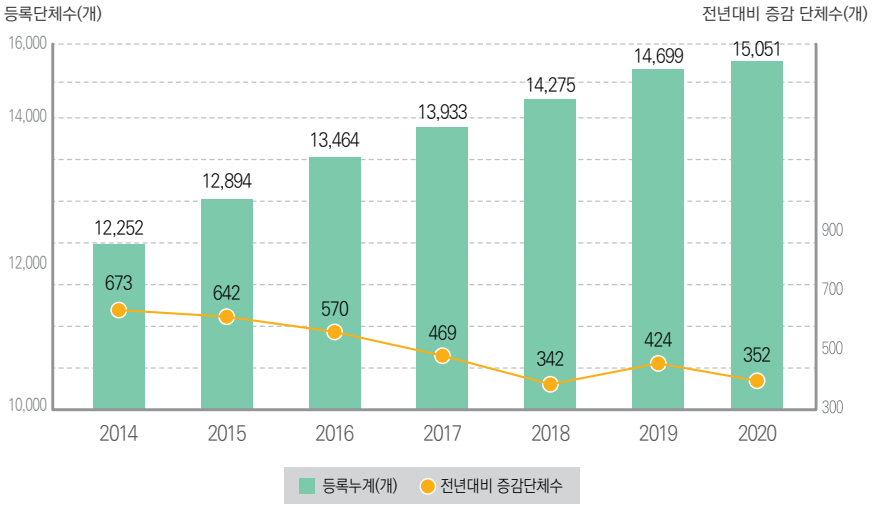

-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시도의 현황이 높게 나타나 **시도**를 중심으로 **활동**(행정안전부 NPAS, '20.12.기준)

  - 지역분포로 보면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에 5,375개 단체가 등록되어 **전체의 40%가 넘는 단체가 수도권에 집중**

| 시 · 도 등록현황 |

(단위 : 개)

| 계 | 서울 | 부산 | 대구 | 인천 | 광주 | 대전 | 울산 | 세종특별자치시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,344 | 2,296 | 873 | 461 | 734 | 665 | 605 | 394 | 33 | |
| | 경기 | 강원 | 충북 | 충남 | 전북 | 전남 | 경북 | 경남 | 제주 |
| | 2,345 | 360 | 489 | 463 | 982 | 609 | 844 | 790 | 401 |

-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기관유형은 **비영리법인이 약 68.3%, 비영리민간단체가 약19.8% 정도**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*

  * '19년 지방행정연구원,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관련 기초자료 조사

## 법인세법상 공익법인

- 법인세법상 **공익법인은 41,544개**(국세통계, 2020년기준)이며 **종교관련 법인이 21,375개로 50%**를 차지, 전체의 45%인 18,719개 단체가 수도권 집중

| 사업목적별 분류 |

| | 종교보급 | 사회복지 | 교육 | 학술장학 | 예술문화 | 의료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21,375 | 4,518 | 1,844 | 4,985 | 1,743 | 1,135 | 5,944 |

## 시민단체 참여율

- 2013년 이후 50%, **시민사회단체 참여율도 약 10% 내외 유지**(e-나라지표)

| 사회단체참여율 |

| % | 2006 | 2009 | 2011 | 2013 | 2015 | 2017 | 2019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민사회단체참여율 | 10.8 | 12.9 | 11 | 11.3 | 9.4 | 8.4 | 12.6 |

##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 현황

-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록 단체 현황조사에서 **임원수가 1~9명인 기관이 5,050개 (67.4%)**로 가장 많고 100명 이상인 기관은 13개(1.7%)에 불과

| 임원수 |

| | 조사대상 | 응답 | 0명 | 1-9명 | 10-19명 | 20-49명 | 50-99명 | 100명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29,234개 | 7,497 | 54 | 5,050 | 1,990 | 351 | 40 | 13 |

* '19년 지방행정연구원,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관련 기초자료 조사

- **상근직원 수가 1~9명인 기관이 2,745개(47.1%)**로 가장 많았으나 상근직원이 없는 경우도 2,373개(40.7%)로 9명 이하 기관이 전체 87.8% 차지

| 상근직원수 |

| | 조사대상 | 응답 | 0명 | 1-9명 | 10-19명 | 20-49명 | 50-99명 | 100명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29,234개 | 5,832 | 2,373 | 2,745 | 307 | 228 | 79 | 100 |

* '19년 지방행정연구원,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관련 기초자료 조사

- **연간 자원봉사자가 없는 기관이 2,567개(65.6%)**로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인 기관이 540개 (12.8%)를 차지

| 연간자원봉사자수 |

| | 조사대상 | 응답 | 0명 | 1-9명 | 10-19명 | 20-49명 | 50-99명 | 100명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29,234 | 3,911 | 2,567 | 287 | 122 | 218 | 177 | 540 |

*'19년 지방행정연구원,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관련 기초자료 조사

- 서울시 소재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**200명 이하의 회원수를 보유한 단체가 약 50%**를 차지, 1,000명 이하가 80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*

*'20년 (사) 시민, 서울시 소재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3,360개 단체를 대상 설문(응답 433개소) 조사 결과

- 2017년 **기준 예산 규모는 2~5억원(20.6%), 1~2억원(18.2%)** 인 경우가 가장 많고 5천만원 이하도 30.5%로 5억원 이하가 전체 69.3% 차지
- 응답 단체들은 **주로 회비(29.8%)와 후원금(22.7%)를 통해 예산을 확보**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(15.9%), 사업수익(13.5%), 민간기관지원(8.6%) 순
- **사무공간은 56.1%가 월세 임대**, 공유공간 사용(15.7%), 자가(11.3), 무상임대 및 기부공간 (7.9%) 순이며 사무공간이 없는 경우도 1.4%

## 별첨3 영국 시민사회 전략 개요

### 1. 명칭 및 성격

- 시민사회전략(Civil Society Strategy: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)
- 정부가 다가올 미래에 지역공동체(communities)의 번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구상해 놓은 미션지향적 전략 계획

### 2. 전략 추진 주체 및 과정

- 디지털 · 문화 · 미디어 · 스포츠부(Department for Digital, Culture, Media and Sport)의 시민사회청(Office for Civil Society)이 주도,관련 부처(주택/지역사회/지방정부 등) 협조
-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, 정부 내/지역단위/시민사회-행정 공동워크숍 개최를 통해 수립, 2018년 하반기에 공식 발표

### 3. 주요 내용

- "풍요로운 삶과 사회정의"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'사람, 장소, 사회영역, 민간영역, 공공영역'으로 나누고, 각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15개 미션과 정부활동을 담고 있음
- 정부활동에는 자원의 조달, 지원촉진 방안, 주체들의 역량강화, 이를 위한 제도도입과 개선 내용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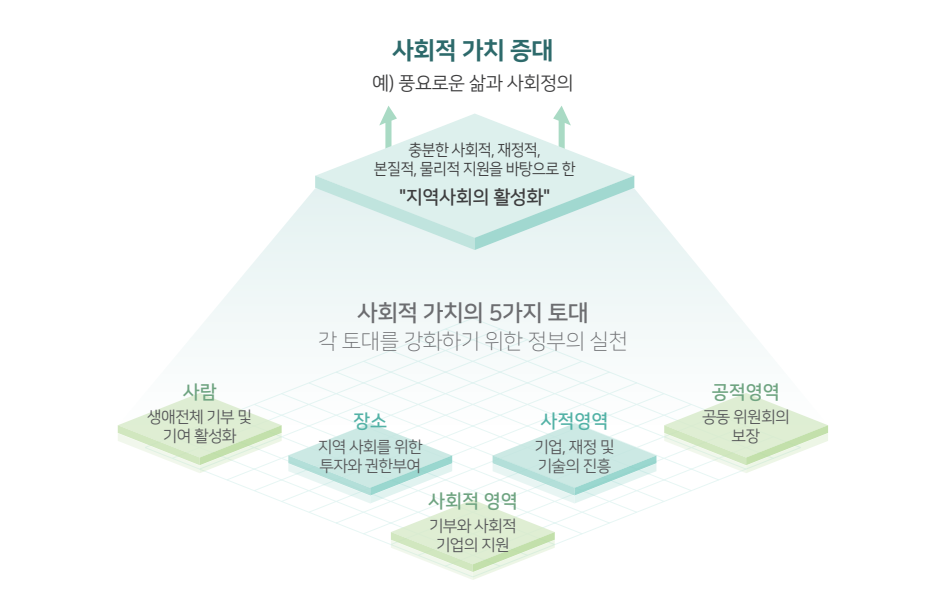


* 출처: HM Government, 2018: 19

2022-2024

#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